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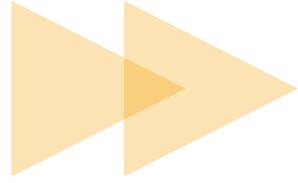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토론회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정보에 관한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공공·민간부문을 망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제정, 오는 9월 30일 본격시행을 앞두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 후향적 연구 등에 사실상 필수적인 환자 의료정보 또한 이 법 적용의 예외가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할 공익적 목적의 연구마저도 제한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지난 6월 17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공동으로 '보건의료 정보화 및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토론회 프로그램

제1부 주제발표	좌장 : 박병주 (서울의대 교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 취지 설명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을 위한 제언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제언	박광진 (한국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본부장) 박소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사업부장) 배종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
제2부 토론 및 합의	좌장 : 허대석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지정토론	이영성 (국가지정 의학연구정보센터장) 신현호 (법무법인 해울 대표변호사)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
종합토론 및 합의도출	





토론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제정취지를 살펴보고, 보건의료 정보화 추진과 공익적 연구 활용을 위한 제언들이 발표됐다. 이후 학계, 법조계, 국회 관계자를 꽤널로 하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개인정보 보호법, 의료분야에도 적용

개인정보의 경제적·사회적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¹도 개인이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새 법은 이를 반영해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정보주체의 동의선택권 명확화, 개인정보 유출사실을 인지한 경우 정보주체에 해당 사실 통지의무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의 제정목적 중 하나가 산업별·영역별 개인정보 보호수준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공통의 일원화된 보호원칙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적용범위는 금융, 정보통신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영역도 해당된다. 따라서 개별 의료기관의 의무기록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건강보험청구자료의 관리·활용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기존에도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적인 개념이 각종 보건의료관련 법률 등에 규정돼 있었으나 실제 그 집행은 미흡하였던 반면, 새 법 시행 후에는 개별법에서 구체적인 예외규정 명시가 없다면 새 법을 따라야 하므로 의료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의 대응 방안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이들 자료를 활용한 후향적 연구는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도 일부는 지금보다 더욱 까다로운 절차를 밟게 되어 원활히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의료정보가 가진 특수성도 동시에 고려할 필요

그러나 전문가들은 의료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일례로 프랑스는 1998년부터 스마트헬스카드시스템을 도입, 응급환자들에 관한 사전정보 획득으로 인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병원 간 중복검사·중복처방률이 낮아져 의료비용이 절감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의사들의 자발적인 진료의 질 관리가 이루어져 국가 전체 의료의 질이 향상된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통계청의 사망자료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개인별로 연계하면 각종 질병을 가진 환자들에 대한 치료방법(약물)들이 궁극적으로 환자의 사망률을 얼마나 낮추는지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치료내용별 치료 효과를 짧은 시간에 효과적이며 적은 비용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별도의 임상시험 등의 연구를 수행해 그 결과를 얻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력이 동원되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생각하면 국가 차원에서의 기여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의료정보가 가진 활용성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필요한 부분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대효과와 실체화 필요, 그러나 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 구축 병행해야

한편, 의료정보의 높은 활용가치에도 보건의료 분야의 콘텐츠가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반면, 개인정보의 비보호로 인한 피해양상과 규모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나타나 일반

¹ 개인정보 자기결정권(Self 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인에게 직접적으로 와 닿는 것이 국민을 설득하는데 어려운 점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그 활용가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에 투자하고 그 성과를 보여주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민등록번호제도와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나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는 데에는 최적의 여건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정보의 집합체인 이 자료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한 전문센터나 인력 등의 확보에도 적극 투자하는 것이 균형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필요성을 공감하는 공공기관들이 협력해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할 시점

‘개인정보 보호법’ 하에서 의료정보를 활용한 연구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동시에 국가적인 편익을 고려해 이를 안전한 시스템 하에서 활용하고, 특히 여러 기관에 분산된 의료정보를 활용한 공익적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는, 공익적 연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즉, 명확한 방향성과 절차에 대해 고민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동시에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해 전략적으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해야 할 시점이다.

「개인정보 보호법」보건의료 공익적 연구 활용 관련 주요조항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7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

2.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

3.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

4. 언론, 종교단체, 정당, 이익단체, 선거,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